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65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원택・윤준병・송옥주

문금주 · 서삼석 · 이병진

어기구 · 장종태 · 임미애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 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 4 신설).
- 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 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 자.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 차.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함(안 제16조의3 신설).
-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 파.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곡과"를 "미곡・밀・콩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정부관리양곡의"를 "양곡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정부관리양곡의"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국무회의의"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로, "대통령의"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 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 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 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

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 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 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허세율로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 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 고시된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 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가격안정 제도 대상 품목의 공정가격(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공정가격(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를 "매입·판매의 절차"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 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 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
- 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방법과 기간 제16조의2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 등으로"로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 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 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22조의 제목 중 "미곡유통업"을 "양곡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미곡의 유통기능"을 "양곡의 유통기능"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으로, "미곡의 매입"을 "양곡의 매입"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개 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양곡 매입 및 매 입한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 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
 -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 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제1조(목적)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	
을 안정적으로 <u>확보함으로써</u>	<u>확보하고 생산</u>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u>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u>
로 한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u>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u>
	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	3
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	
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	
는 <u>미곡과</u> 대통령령으로 정하	<u>미곡·밀·콩과</u>
는 양곡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u>매년 정부관리양곡의</u> 수급 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2. (생 략)
-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u>4.</u> (생 략)

- ③ (생 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시하여야 <u>한다</u>.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5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① -----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
②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u>관리</u>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
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
<u>한 사항</u>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하고, 지체 없</u>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 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다.

② (생략)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의-----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 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 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 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 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

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 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 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 ・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 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 축 ·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 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 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 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용) ① ---------- 하며, 공공비축양곡 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판매 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 · <u>판매가격은</u>-----

④ (생략)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생략)

<신 설>

<신 설>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 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 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 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 계에서 지출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
조제1항에 따라 양허세율로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이 국내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 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 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 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 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 (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 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 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 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 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 ② · 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 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 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

항에 따라 확정 · 고시된 양곡 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공 정가격(기준가격)을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의 차액[공정가격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제16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수급 관리) ① -----

- 1. · 2. (현행과 같음)
-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u>매입·판매 물량의 산정</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 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관리양곡의 판매

5	
	• 판매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 매에 필요한 <u>사항과 생산자단</u> 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 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u>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u> 다.

⑦ (생략)

<u><신 설></u>

<u><신 설></u>

의 절차	
	나항
<u>\(\bar{L} \) \\ \(\bar{L} \)</u>	
 .	

- 6 -----

----<u>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u>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⑦ (현행과 같음)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 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5월 3 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 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 곡을 재배하고 <u>「농업소득의</u>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 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 게 할 수 있다.

<신 설>

- 1.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 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 · 보조의 방법 과 기간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업·농촌 공 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 제15조에 따 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자 등으로-----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
 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 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 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 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의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 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

 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 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 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 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 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 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 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 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 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 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 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 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 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

 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 립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 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 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 성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u> 농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u>미곡의 유통기능을</u> 능률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u>미곡종합처리장</u>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 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미곡의 매입</u>에 필요한 자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 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소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
-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 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양곡 매 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선 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 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 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양곡의 유통기능</u>
Ob 고 조 장 키 기 기
<u>양곡종합처리장</u> <u>등 양곡</u>
<u> </u>
<u>곡의 매입</u>

있다.

③ (생략)

<u><신 설></u>

- ③ (현행과 같음)
-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 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 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원할 수 있다.
 -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신</u>설>

<신 설>

<u>1.</u> ~ <u>6.</u> (생 략)

② (생략)

제36조	(과태료)) ①	

-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 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

 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 9.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